

2026년 제2회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[1호 안건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51 번지(C1 BL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6. 3. 31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송도국제화복합단지(주) 제갈원영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				
	지 번	151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14,833.70㎡	용도지역(지구,구역)		일반상업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8,652.19㎡	건폐율	58.33 %	층수 지하 : 2층 / 지상 : 25층
	주 용 도	업무시설 (오피스텔)	구 조	철근콘크리트	건축물 동수 1동
	최고높이	106 m	용적률	349.97%	연면적 합계 77,714.77 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공통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인허가 진행할 것 ○ 초등학교:송원초에 배치가능, 중고등학교는 다소과밀하나 학교군 내 분산 배치 가능 ○ 오피스텔 용도는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합의 70% 이하가 되도록 해야하며, 그중 전체의 20%는 전용면적 40㎡ 미만으로 해야함 ○ 건축주는 해당 블록이 청년층(대학생 등)의 핵심 앵커시설 및 상업시설의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「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승인 조건(2023. 7. 24.)」 등을 참고하여 건축계획 수립 필요(경제청 개발계획총괄과 협의의견). 끝.			
심의결과	[○] 원안 의결 [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